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 의 자 : 신장식 · 김재원 · 강경숙
김준형 · 서왕진 · 김선민
이해민 · 차규근 · 황운하
윤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.

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. 그 결과,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962호) 및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9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금융위원회 위원장·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”을 “금융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